

2007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사하구청장

2007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8. 5월 16일 ~ 6월 4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한승정(사하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박병준(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이재학(공인회계사)

목 차

1. 일반회계
 - 가. 세입분야
 - 나. 세출분야
2. 특별회계
 - 가. 세입분야
 - 나. 세출분야
3. 기금결산
4. 채권현재액 결산
5. 채무현재액 결산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7.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8. 최종의견

2007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8)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65,666,322	187,726,114	165,235,065	3,077,023	19,414,026
당해년도	172,972,607	198,041,438	175,315,380	3,799,177	18,926,881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75,315,380천원은 예산현액의 101.3%로서 2,342,773천원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809,861천원의 초과 수입과 지방세 356,942천원의 초과 수납 등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8.5%로써 전년도 88.0%보다 0.5% 증가하였으나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 징수에 좀더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분한 금액이 3,799,177천원으로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음.

나. 세출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 년 도	155,589,030	10,077,292	165,666,322	154,650,729	7,365,115	3,650,478
당해년도	165,607,492	7,365,115	172,972,607	164,190,034	4,852,113	3,930,460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165,607,492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365,11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2,972,607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92%에 해당하는 164,190,03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852,113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4,036,475천원은 낙동축 가로화단 보식용 수목구입, 다대도서관 건립, 신평·장림산단 실태조사, 장림유수지 고재배수로 설치공사 등으로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815,638천원은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에 해당되는 3,930,460천원이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액은 구 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2. 특별회계

가. 세입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4,148,069	21,536,105	14,436,874	40,895	7,058,336
당해년도	32,706,459	40,678,471	32,811,764	387,461	7,479,246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32,811,764천원은 예산현액의 100.3%로서 105,305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39,61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5,770천원), 주차장특별회계(25,830천원) 등의 세입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0.6%로서 전년도 67.0%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징수를 제고가 필요함.
- 불납결손액은 387,461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3%인 7,479,246천원으로 결산되었음.
-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음.

나. 세출분야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 년 도	11,544,915	2,603,154	14,148,069	10,850,502	203,256	3,094,311
당해년도	32,503,203	203,256	32,706,459	26,047,303	458,000	6,201,156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32,503,20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3,25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706,45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6%에 해당하는 26,047,303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58,000천원으로서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은 없음.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9%에 해당하는 6,201,156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 등에 기인함.
- 세출결산액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3. 기금결산(청사건립기금 등 7종)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수 납 액	지 출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11,879,485	1,070,480	10,708,272	2,241,693

○ 결산개요

- 청사건립기금 등 7종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1,879,485천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을 계산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41,693천원으로 정확히 결산되었음.

4. 채권현재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576,680	520,479	100,638	3,996,521
일반회계	3,123,079	296,874	11,052	3,408,901
특별회계	453,601	182,405	89,586	546,420
기 금	0	41,200	0	41,200

○ 결산개요

- 당해연도 보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576,680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20,479천원이 발생하고 100,638천원이 소멸되어 결산액이 3,996,521천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으로써 정확히 결산되었음.

5. 채무현재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039,384	0	832,150	1,207,234
일반회계	1,403,600	0	413,600	990,000
특별회계	635,784	0	418,550	217,234

○ 결산개요

-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39,384천원에서 발생액은 없었으며 832,150천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7,234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청사신축(동사, 문화회관 등)관련 지방채 차입금임.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천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89,677,523	138,873,829	12,441,958	416,109,394
행정재산	273,806,610	137,166,128		410,972,738
잡종재산	15,870,913	1,707,701	12,441,958	5,136,656

○ 결산개요

-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89,677,523천원에서 138,873,829천원이 증가하고, 12,441,958천원이 감소하여 416,109,394천원으로 결산되었음.

7.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 8건

== 세 입 ==

- ① 정확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②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 철저
- ③ 2차 납세의무 최고시기 단축

== 세 출 ==

- ④ 징수관리포상금 집행의 효과적인 운영
- 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인 포상금 집행부진
- 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 운영 철저
- ⑦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 상환방법 변경
- ⑧ 예산전용제도의 엄격한 운영

정확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허가 상황, 도시계획 및 소유자 변경 등의 요인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고율의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변경 내역을 인·허가부서 등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 구분을 즉시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 철저

-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은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 납부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또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매년 부과하는 과목중에서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법적근거에 의한 정확한 부과에 따른 체납의 경우 압류 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2차 납세의무 최고시기 단축

- 법인이 재산세, 사업소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여 체납세 징수율

을 제고하고, 그 시기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징수관리포상금 집행의 효과적인 운영

- 일반행정비.재무행정.징수관리.포상금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포상금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함.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인 포상금 집행부진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인 포상금의 경우 집행이 전무한 바,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던지, 존속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운영 철저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대한 체납자중 일부는 대출 당시 연령 등으로 보아 차명일 가능성이 높고 대출 대상사업의 성격 또한 영세민대출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대출이 규정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급적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하였으면 함.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 상환방법 변경

-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청구를 받은 장기채납자 중 상환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감안할 때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예산전용제도의 엄격한 운영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전용의 규모가 세출총액 규모에 비해 적절하며, 대부분 전용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신평.장림 주거단지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의 전용의 경우 두 세목의 성격으로 보아 전용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였으면 함.

8. 최종의견

-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2008년 5월 16일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등의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여 사하구의 2007년도 재정운영은 수지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6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한 승 정 (인)

결산검사 위 원 박 병 준 (인)

결산검사 위 원 이 재 학 (인)